

2018 충북사회복지계가 제안하는
충북지역 복지의제

복지는  생환입니다

2018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 시민단체

충북지역 6대 복지의제

- 사람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필요합니다.
 충북형 기초보장제도와 복지기준선 만들기로 “가난 걱정 없는 우리동네”9
- 인권의 가장 기본은 주거복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비 보조로 “편안함이 있는 주거”10
- 지역민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성장합니다.
 공공보건 기능 재편과 공공보건 연계를 통한 “시민건강지킴이”11
-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원스탑시스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종합돌봄서비스 실현을 통한 “돌봄, 지역사회가 챙긴다”13
-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한 지역형 복지싱크탱크조직이 필요합니다
 싱크탱크형 충북복지재단 설치하고 청주복지재단 대대적인 개혁 필요14
-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자본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시급15

충북지역 영역별 알찬 복지이제

주거

- 우리지역 주거복지 허브 “지방정부별 주거복지센터 운영”20
- 대학생 주거부담 Down 편안함 Up “대학 없는 곳에 대학가를 만들자”21

안전

- 응급 병원이송 체계 “생명지킴이”23
- 무장애 도시 만들기 “사람을 향합니다”24

건강

- 아동, 노인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선물하는 “건강 과일바구니”26
- 노인·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집으로 달려갑니다”27

사회적약자

-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해피콜29
- 사회적약자 무상버스 “타요타요”30
-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 창의센터 “무한도전”31

사회인프라

- 당사자형 주민참여예산 “복지예산 우리가 결정한다”33
-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제작해 줄 “충북아동청소년 행복재단”34
-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 전담공무원제”35

교육복지

- 충북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실현”37
- 충북에 특화된 교육복지프로그램인 “4plus(조식+/건강+/정서지원+/문화+) 특화사업”37
-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교육복지+실현”38
-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교육복지운영 모델 적용39
- 교육복지관련 통합관리를 위한 충북 교육계의 행정체계 개편39

충북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제안하는 복지외제

- 사회복지관 운영환경 개선.....43
- 자활사례관리사 운영 배치.....44
- 자활사업을 위한 필수적 공간 지원.....45
- 충북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최우수당(대우수당) 지급 의무화46
-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47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여성폭력방지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49
-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만들기.....51
- 장애인의 학습권 지원 및 보장.....52
- 장애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확대5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54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외 4건.....55
- 시니어클럽 정체성 확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58

충북지역 6대 우선 복지의제

복지
는
생활입니다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기준선 만들기로 “가난 걱정 없는 우리동네”

1. 현황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영국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사회안전망으로서 1999년 김대중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음. 이제도의 특징은 기존 생활보호법 시절의 시혜적인 복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그 의미가 큼.
-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들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 기능보다는 제도의 명목적 유지 수준으로 전락함으로써 “세모녀”같은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음. (사실상 가족단절임에도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정부추계로 93만명임)
- 이런 현실은 수요자에 맞는 정책설계가 아니라 공급자의 재정상황에 따른 수요자를 조절하는 비인간적인 제도 운영의 문제로 그 심각성은 날로 비인간화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중앙정부 종속적인 사회정책을 지방정부에서 극복하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2. 추진전략

- 충북도 단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충북도민 최저기본선&적정기본선 설정
-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설치 운영 : 시군구 지역별 모델 만들기

3. 추진방법

- 1) 충북도 단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충북도민 최저기본선&적정기본선 설정
 - 비현실적인 국가의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인 최저&적정생계비로 책정. 정책적 목표화
- 2)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각각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적용.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 목표로 하되 초기는 가족단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극 수급권자로 보장함.
- 3) 증평 모녀사건 등과 같은 복지사각 내외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읍면동 인력 2배 증원
 - 서울시의 “찾아가는동사무소(일명 찾동)”형태로 읍면동을 인력 증원과 기능 전환 노력 필요.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직 등 기존 읍면동 인력의 최소 2배수 증원
 - * ‘찾동’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함.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보조로

“편안함이 있는 주거”

2

1.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0%이상인 경우를 ‘주거비 부담가구’라 함.
- 충북도의 주거형태를 보면(2015기준), 자가 65%, 월세 20%, 전세10%, 기타 5%로 자가집이 없는 경우가 45% 수준으로 주거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 2015년 기준 주거보급율은 충북도 111.2%, 청주시 111.7%로 전국 평균 102.3%보다 높지만 충북도민의 주거 불안정성과 주거양극화는 심각함.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3년 기준 5% 수준이고 이는 OECD 평균 12%의 절반 수준으로 비자가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 지원이 현저히 미흡한 수준임.
- 주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중앙정부는 주거복지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의존성이 높음. 지방정부 차원의 이렇다할 주거복지 정책은 전무함. 주거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는 점은 심각한 주거문제를 양산할 우려가 큼.
- 주거는 적절한 소득·고용·교육·건강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배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함. 따라서 충북도내 주거약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혼합(social mix)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 지방정부내 주거복지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중장기적인 주거정책 생산
- 지방정부 차원의 생애주기별 주거정책 수립과 실행, 보완적 개념으로 주거비 보조제도 실시

3. 추진방법

- 1) 지방정부내 주거복지전달체계 수립 : 주거복지 개념 설정, 주거복지 전담 부서설치(복지인력배치)
- 2)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확대 (목표치 설정후 실행)
 - 대학생(해피하우스&학생주택), 결혼전(원룸형 소형), 신혼(소형주택), 중년(임대형), 노년기(케어홈)
 - 장애인, 학령기 아동 등등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에 따른 주거지원정책 병행
 - ▲지방정부 재원투자를 통한 방법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허가와 관련한 기부채납 활용 방법(지역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 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 재고확충) ▲기존 민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통해 공공임대 프로그램 확대 ▲기타
- 3) 주거비 보조제도 실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보조&임대보증금 용자
 - 차상위계층에 대한 민간임대료 보조, 전세자금 용자 등

공공보건 기능 재편과 공공보건 연계를 통한

“시민건강지킴이”

3

1. 현황과 필요성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남자 성인 2명 중 1명은 비만,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 8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음. 이는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수위를 다투고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약만 제대로 먹고, 식습관이나 운동 등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음.
- 예방활동의 소홀로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사회활동 위축으로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고,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쓰러지면 점차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 이로 인한 가족내 간병과 부양의 부담이 다른 가족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연쇄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을 유발하게 됨.
- 미국 기업들은 건강에 1달러 투자하면 적게는 1.8달러에서 많게는 6.15달러를 회수하는 것으로 분석함. 이런 이유 때문에 호주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비용 지출을 ‘우량주투자(Blue Chips Investment)’라함.
-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기존 병의원과의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음. 하지만 공공의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님. 예방은 보건(지)소, 치료는 동네병의원이라는 민.관의료체계에 대한 상생방안 관점으로 접근.
- 따라서 기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 보건소의 기능을 “시민 건강지킴이센터”로 기능강화.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
- 보건지소, 보건소, 의료원, 국립대병원 등과 연계된 공공보건 기능재편과 연계 실시

3. 추진방법

1)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 전환과 연계 강화

1. 보건지소 : 기본적으로 관할시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로 시민개별 건강관리카드 관리(주기적 기본적 건강 검진 실시 및 상담)
 2. 보 건 소 : 보건지소의 건강예방활동 정책 수립, 보건지소 활동 지도 감독, 건강의심이나 필수예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보건지소로부터 이첩 받아 검진 활동 진행
 3. 공공병원 (청주의료원) : 보건소로부터 이첩 받은 시민들의 심층 건강 검진 및 치료
- * 구체적 역할 분담은 연구활동을 통해 구체화

2) 청주, 제천, 충주시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 인구 5만명당 1개소 기준

3) 기초단위 이동보건센터 운영 : 일반건강검진 예방 차량, 치과진료 차량 별도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통한 전달체계 확립

: 1차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소, 공공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 2차적으로 공식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위한 활동을 위해 위 공공인프라와 함께 국립대 병원, 광역치매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장애인, 노인 등)와 연계된 협의체 구성 -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진단팀 구성 - 궁극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명시된 사항임.

[별첨] 보건지소 기능 리모델링 예시

- 시민들 개개인의 건강예방과 상담 전담형 : 보건지소는 관할시민들의 건강주치의적 개념으로 시민개별 건강관리카드 관리로 주기적 시민개개인의 기본적 건강검진 실시 및 상담 진행
- 주요활동내용 : 건강증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필수예방접종, 질병예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연계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
- 지소별 특화사업 : 거주 인구별 특성에 따라 지소별 특화사업 가능.
 - * 예로, 장애인과 노인 밀집지역은 치과진료 가능 장비 구축(예 구로주말치과진료소), 아동밀집지역은 성장클리닉을 특화 하는 등 지역별 작은 특화로 주민 신뢰 강화
- 보건지소 공간구성 : 진찰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건강홍보실, 사회사업실, 자원봉사실
- 필수 인력구성 :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 *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반드시 전문의 확보. 전문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상근인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공중보건의, 의료원 인력 순환근무, 국립병원 의료인력 순환근무, 촉탁의,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자원협조 등을 활용
 - * 상담 및 사례관리는 사회복지관 인력과 협력하여 보건복지연계 체계 구축
 - * 건강예방 및 홍보활동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하여 진행
 - * 물리치료, 상담, 방문간호 등 전문적 자원봉사자를 개발, 육성하여 사회자원으로 활용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원스탑시스템의 새로운 탄생 돌봄, 지역사회가 챙긴다

4

1. 현황과 필요성

- 보육, 학령기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 되고 있음.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문제, 장애라는 특성에 대한 돌봄문제와 함께 장애인노인의 증가로 인한 또 다른 돌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고령화사회라는 사회적 의제앞에 높은 노인돌봄까지 우리 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돌봄의 문제는 빅이슈가 되고 있음.
-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돌봄의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님. 이처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지점을 찾기 어려움. 중앙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정책이 병행될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2. 추진전략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와 해결을 위한 부서 통합 컨트롤타워형 직제 마련. “가칭) 걱정없는 돌봄통합지원단”으로 자치단체장 직속 (또는 부자치단체장 직속)형의 전달체계 마련

3. 추진방법

- 돌봄통합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은 실무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보다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함. 실무업무는 기존의 각 업무분담 부서에서 담당함.
- 돌봄 관련 관련 부서 실무인력과 기획예산 관련 실무인력(효과적인 예산 계획과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 혼용형태로 돌봄통합지원단 조직 구성
- 역동적이고 실효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한 부서에 존재하는 조직편제가 아닌 자치단체장 직속, 최소한 부자치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통합적 사고와 업무체계를 갖도록함.
- 돌봄과 관련한 공공기관, 민간기관들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논의체계를 갖도록함.
- 조직구성 1단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2단계로 조직개편 (이때 별도 돌봄통합지원단 이전 단계의 자치단체내 TF 한시적 운영, 이후 확대 격상), 3단계로 정식 지원단 출범
- 조직편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조직구성만에 있지 않음.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돌봄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음과 함께

지방정부 복지정책 내실을 위한 전문조직으로서 싱크탱크형 중복복지재단 설치 청주복지재단 대대적 개혁 필요



1. 현황 및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송파세모녀&중평모녀 자살 등 복지내외사각지대 문제, 전달체계의 미흡의 문제, 사회복지인력 부족의 문제, 양질의 사회복지종사자 확보의 문제 등 일선 현장이랄 수 있는 지역내 사회복지 현안들은 너무도 많음.
- 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중앙정부 의존성이 높다 보니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할 방안들이 많지 않음. 지역별 시기별 특성화 되고 있는 복지현안들을 어떻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겠는가.
- 2018년 충북도의 전체예산은 3조 7천억원이고 이중 복지예산은 1조 3천억원으로 일반회계대비 35%라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청주시는 1조 9천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중 7300억원인 39%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런 예산편성은 향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문제는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수준, 삶의 수준도 역시 늘어 나고 있는가임.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그럴 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있음.

2. 추진전략

- 중복복지재단 신설·설치로 중복 복지정책의 싱크탱크화
- 청주복지재단의 공공기능 강화로 전문 복지싱크탱크화

3. 추진방법

- 1) 중복복지재단 신설로써 중복 복지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욕구에 기반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 견인
 - *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복지재단으로 기능전환시 출연재산은 기존 건물등을 기반으로 조례폐기&제정으로 가능
- 2) 청주복지재단은 설립초기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됨. 기능운영에 있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불협화음이 많음. 2018년 기준 7300억원에 가까운 복지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미래지향적 복지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청주 유일의 휴먼서비스 싱크탱크로 재부상화
- 3) 충북과 청주의 복지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수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대화채널 복원(고립형 운영방지), 낙하산 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조직운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독립적 민간운영의 전문성 최대한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6

1. 제안배경

- 충북 사회복지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적용(충북형 단일임금체계 추진)
- 충북형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단일 직위 호봉제 도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격차 해소 : 비분권시설 등에 해당하는 처우가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음
- 보조금 지원예산에서 일정 수준 인건비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처우개선 안정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고환원시설뿐 아니라 도비나 시군비 등의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받는 시설의 예산 지원방식 체계 개선 필요
- 장기근속 인센티브(안식휴가제도,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제공,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교육훈련 기회 강화,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안전장치 보급 등 복리후생제도 마련

2. 추진방안

1) 단일임금체계 마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해당하므로 어느 시설에 근무하더라도 같은 급여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일 직위 호봉제¹⁾를 도입하고 있는 교사, 간호사 등의 체계를 참고하고 현재 운영중인 직급별 호봉제²⁾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대안제시 필요
 - 충북형 단일임금체계를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의 현실적인 개정 작업필요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 강도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직무분석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방안 수립

1) 교사나 간호사처럼 공통으로 직종만 분류하고 동일 직종 내에서는 하나의 호봉체계를 유지하여 경력에 따른 기본급 단가를 부여하는 체계를 말할. 계급 개념이 없는 직무나 사회복지시설에 도입할 경우 직급을 조절하면서 인건비가 낮아지는 사람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를 올려주려면 예산 증가가 발생함.

2) 직종 내 4~5단계 직급을 부여하고 각 직급에 따라 상이한 기본급 단가를 부여하는 체계. 현재 사회복지시설 적용 중.

2) 수당체계 개선을 통한 격차해소

- 비분권 시설에 대한 수당 증액을 통해 격차를 해소
 -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지방비 투입 증액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우수당’처럼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여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필요

3) 항목별 예산지원

- 예산지원방식 체계 개선
 -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포괄보조금 형태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일부 시설은 실시 중)하여 품목별로 교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4) 복리후생제도 마련

- 장기근속 안식휴가제도 등 인센티브 제공
 - 장기근속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사명감을 유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제도 마련
 - 자치단체 우수 담당자 포상제도 및 우수사례발굴을 통한 승진확대와 인력증원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예방을 위한 대책과 인권보호 관련 안전장치 보급 필요
-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포인트는 개인차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
- 보수교육비 전액지원
 - 보수교육비 전액지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기회 강화 마련과 제도개선
-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 각 분야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휴가로 인한 휴식, 교육이나 연수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다양한 범위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3. 기대효과

- 처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전문성 인정 수준향상
- 장단기적 ‘충북형 처우개선 방안 및 단일임금체계’를 위한 정착화 틀 마련
- 보수 수준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시설 유형별·시설규모별·운영주체별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불평등·불만요인 극복대책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확보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안정적 정착화

충북지역 영역별 알찬 복지혜

복지는 생활입니다

부지는 생활입니다

주거

우리지역 주거복지 허브

‘지방정부별 주거복지센터’

주거

1. 현황과 필요성

- 현재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급여(현금)은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현물은 지자체의 추천에 따라 주거급여(현물)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조건이며, 주거복지센터는 인력부족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활동범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주거복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및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 수급자 중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거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주거복지를 지원할 네트워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총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지역사회 내 여러 주거복지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양한 공공·민간 주거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 주거빈곤, 노후주택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개량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내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각 광역과 기초지방정부별 00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 추진전략

-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3. 추진방법

- 1)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인 관련 조례 제정과 역할 명시
- 2) 주거복지센터 역할
 - 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활동가 양성, 전문적인 주거복지정보&상담기능 강화
 - 지역 내 주거취약 계층 집수리지원 및 긴급연료 지원 활동 (지방정부 예산 연계)
 - 사회복지서비스 단체, 공기업,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성(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성(데이터 구축 및 제도개선안 마련, 주거지원 협력) 및 민간기업 네트워크 구성

대학생 주거부담 Down 편안함 Up

“대학 없는 곳에 대학가를 만들자”

주거

1. 현황과 필요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매학기 주거비용이 인상됐다는 대학생들의 답변이 38%에 달했고, 월평균 주거는 생활비의 35% 수준이라고함. 국가에서는 월 생활비 중 30%이상이면 주거부담가구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의 주거현실이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나 충북지역의 경우 2014년 110호로 대단히 적은 물량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한편 2016년 충북지역 주요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충북대 24%, 청주대 18%, 서원대 13%로 대단히 낮은 수준임. (대교협 자료)
- 이러한 현실에서 각 지역별로 대학생들이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음.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정비예정구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 방치돼 있는 낡고 오래된 빈집을 보수해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고, 서울 서대문구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스코기업과 연계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모듈러식 대학생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주거부담을 해소 하고 있음. 대구지역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주거부담을 해소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생의 주거비 문제 해소를 위해 이제는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 대학 없는 곳에 대학가를 만들자

3. 추진방법

- 1) 빈집 활용방안 : 청주의 경우 사직동, 모충동 지역 등 도시공동화 되어 가는 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방정부와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수리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 제공하는 방식
* 집수리로 환경개선, 젊은층 유입으로 동네 활기, 월세로 집주인 수입증가, 등 지역재생 효과 기대
- 2) 기존주택 활용 방안 : 지역내 미분양주택, 노후 다세대 주택을 지방정부가 매입한 후 공공임대 기숙사로
-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내 건설회사 등 기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숙사 신축(토지는 지자체 제공), 신규건물 신축, 증축시 일정공간 공공주거공간으로 기부나 활용하는 방안 등
- 4) 주거비 보조제, 전세자금 지원 방안
- 5) 협동조합등의 학생주택 운영방안 : 핀란드 방식으로 조합형으로 신축과 운영담당
- 6) 공유주택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소유의 주택 중 일부를 공유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회운동 : 이때 주거공간 제공 집주인에게 환경개선비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7) 노인집 활용방안 : 사회적 고독, 케어가 필요한 노인소유 주택을 학생들에게 무료나 저렴하게 지원. 동거형
*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까지 일정기간 거주자격 부여로 실질적 목적 달성 노력 필요

복지는 생활입니다

안전

응급 병원이송체계

“생명지킴이”

안전

1. 현황과 필요성

- 고령화 사회에 비례해 응급노인 환자 및 병원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 노인 중 만성질환율 87.9%, 만성질환이 2개 이상 복합이환률도 66.3%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노인 중 거리와 교통이 불편한 물리적 교통이 불편하여 이동제한이 있는 노인이 31.0%로 나타남(2011년 노인실태조사).
- 응급의료 수요 및 병원이용 욕구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병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은 확보되어야 함.
- 특히, 원거리지역의 경우는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이송체계가 부족함.
- ‘119 노인전용 구급차’의 경우 서비스가 협소하며, ‘해피콜서비스’의 경우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응급의료체계 및 병원이송체계 구축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확실한 길이며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임.

2. 추진전략

- 지역응급이송 및 병원이송체계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병원이송체계를 연계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구축

3. 추진방법

- 1) 충북도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이송지원 및 응급이송 차량 배치
 - 배치된 차량은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이송지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이송 차량으로 활용
- 2)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전문 인력 및 운전 인력 배치
 -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전문 인력(간호인력) 1인 및 운전 인력 2인(2교대근무 체계)을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무장애 도시 만들기

‘사람을 향합니다’

안전

1. 현황과 필요성

- 지역사회내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장애적 요소들이 존재함. 물리적 환경으로는 보행 약자들(아동,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만드는 보도턱, 경사로, 인도, 보행을 가로 막는 적치물 등이 존재.
- 사회적 환경으로는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에 대한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 존재.
- 인도 가로등이 차도만을 비춤으로서 어두운 인도를 걸어야 하는 장애요소, 짧은 횡단신호로 인한 장애, 인도공사시 임시보행로 확보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 대중교통과 자건거 이용이 불편한 장애요소 등 우리사회 곳곳에는 물리적, 사회적 장애요소가 산재되어 있음.
- 장애의 개념(Barrier Free)은 ‘장벽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이라는 의미로 건축환경에서는 ‘장애인 과 노인 등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사회 환경관점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장벽이나 장애물이 아닌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장벽 등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해 갖게 되는 모든 편견과 거부, 의도적 배제, 제한과 같은 차별을 의미하게 됨. 따라서 무 장애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의 인식이나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개념임.
- 2012년 전국 최초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진주시부터 2013년 수원시 무장애 도시 도전 등은 향후 도시발전과 지역발전의 지향이 물리적, 사회적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주목하고 있음.

2. 추진전략

- 무장애도시 프로젝트 “사람을 향합니다”

3. 추진방법

- 무장애 도시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채택 : 모든 행정에 무장애 기본요소 설정
- 무장애 도시 만들기 민관협력체계와 지역사회운동 : 공직사회, 시민들의 인식전환 활동
- 무장애 도시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적극적 도시발전 전략화
- 무장애 도시 만들기 실험 추진 : 장애적 요소(사회적, 물리적)를 지표화 하여 해소&전환하는 활동.
 - *예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험 : 무장애 시범도로 개설 등 시·군·구단위 무장애존(Barrier Free Zone) 시범 운영, 무장애 점검체크리스 보급운동, 교통환경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으로 개선
 - *예2) 사회적 환경에 대한 실험 : 무장애 실현 사회창안대회 등을 통한 사회구성원 인식 변화

복지는 생활입니다

건강

아동, 노인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선물하는

‘건강 과일바구니’

건강

1. 필요성

-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섭취 부족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 부족분율도 높음.
- 과일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아동 및 어르신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식습관 유도 및 성인기 만성질환 예방 도모.

2. 현황

- ‘11년~’12년 ‘지역아동센터 과일지원&영양교육사업’(복지부)이 ‘13년 중단됨. 서울시장이 희망일기에 제안
- 서울형 건강과일바구니사업 25개구 5023명에게 지원. 아동의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 등이 증가효과

3. 추진전략

- 취약계층 아동 및 노인특성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노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기여
- 규칙적인 과일간식 제공으로 아동/노인의 건강한 간식먹거리 습관 형성
- 취약계층 아동/노인의 돌봄의 질 향상으로 사회적 만족도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 제공
-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의 사회공헌활동과 함께하는 사업체계 구축
- 사업지원단 운영으로 기술지원 및 효과 평가 체계 구축
- 식생활 관련 인프라 적극 발굴 연계

4. 추진방법

- 영양교육 : 전문가사에 의한 영양교육 및 건강간식 제공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유도
- 건강간식으로 친환경 제철과일을 주당 2~3종류이상 제공 (사과, 오렌지, 포도, 귤 등)
- 과일공급체계 : 지역로컬푸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토록 설계
- 추진체계 구성
 - 보건소 : 사업실행 계획서 작성,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 전·후 조사, 영양교육 운영, 과일발주 및 검수
 - 시·군 :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업 전 후 설문조사, 영양교육 강사 및 자료배포 지원, 현장 모니터링, 월별 운영실적보고 등
 - 총복도 : 사업연계 및 지원계획 수립, 사업공모 및 선정, 사업지원단 운영, 과일제공사업협의체 운영, 기타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의 지원
 - 민간단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영역과 함께 역할 수행

노인·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집으로 달려갑니다’

건강

1. 현황과 문제점

- 2007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사회서비스가 새롭게 확대·공급되고 있음. 현재 중증의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을 통해, 등급외(등급외 A,B) 노인들을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 및 응급안전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등급예외자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대부분 신체지원이나 안부 확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실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저히 낮은 실정임.
- 2011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소득보장 31.8%, 의료서비스 26.1%, 수발서비스 18.7%, 경제활동지원 9.4%, 생활지원서비스 9.0%, 노후주거지원 3.9%로 나타남.
- 이에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경제, 건강, 일상, 정서적으로 분류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역시 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같은 서비스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기에 노인과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필요

2. 추진전략

- 보건·복지·의료서비스별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 지원
-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한자리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3. 추진방법

- 의료 : 공공의료원 ‘찾아가는 한방물리치료사업’ 확대,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
- 건강 :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구강, 복약지도 서비스, 작업치료, 구강지원등
- 복지 : 찾아가는 심리상담, 영양지원,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확대, 이미용서비스등

복지는 생활입니다

사회적약자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사회적약자

1. 현황과 필요성

● 대상자(장애인) 욕구의 변화

- 충청북도 장애인이 이동편의를 위해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확충(22.7%), 저상버스 도입(15.2%)순으로 조사됨 (충북장애인재활증장기계획, 충청북도, 2011).
-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64.9%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함. 이는 대중교통수단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2. 추진전략

- 현재 ‘해피콜’을 이용하고 장애인 약 40%가 비휠체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피콜’은 특장용 9인승(휠체어 1석, 일반석 5석)만이 활용되고 있어 운용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운영체계에 개인택시 부제 활용 및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소용승용차를 도입하여 비휠체어 장애인 및 농촌 거주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3. 추진방법

- 개인택시 부제 활용(배회 운행이 아닌 휴무일날 콜센터 배차에 의해서만 운행)에 의한 증차 효과 고로 비휠체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에게 예약콜이 아닌 바로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소용승용차를 구입하여 ‘해피콜’을 장애맞춤형 운영시스템으로 강화.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능 수행

사회적약자 무상버스

‘타요타요’
사회적약자

1. 현황과 필요성

- 노인교통수당제도는 1990년 1월1일부터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승차권지급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7:3을 부담하였음. 이후 1994년 담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노인승차권지급제도의 재원을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음.
- 일부 수혜자들의 노인승차권의 판매 행위 등의 발생으로 노인승차권지급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어 1996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청한 노인에 대해 현금으로 교통수당이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단계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되었고 2009년도에 이르러 전면 폐지되었음.
- 노인교통수당제도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차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와 지방재정의 열악화로 인하여 제도의 존폐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약자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단계적으로 무상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주고, 다양한 보건, 복지, 여가문화의 참여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추진전략

- 충북도내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노인세대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구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문화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에게 나이와 지역에 따라 단계별로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방법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버스이용 실태조사 및 버스무료이용 계획수립
 - 기존에 노인승차권지급제도와 노인교통수당 등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예방과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위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노인들의 버스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버스무료이용 계획을 수립함
- 70세 이상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 대해 시내버스 이용료 전액 지원
 - 70세 이상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자치단체에서 발급
 - 아동은 증명자료를 지참하지 않고, 청소년은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혜택
 -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 창의센터

‘무한도전’

사회적약자

1. 현황과 필요성

- 아동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은 또래 친구가 50.0%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족)가 32.5%, 기타 13.0%, 이성친구 2.8%로 나타났고, 여가생활을 보내는 주된 장소는 집(가정)이 64.0%로 가장 많았고, 학교 13.2%, 기타 11.4%, PC방 8.9%, 복지센터(청소년 시설) 13.0%, 도서관 1.1%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와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친구와의 수다가 23.7%, 게임이 19.3%, 수면이 17.3%, 해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견이 16.1%로 나타나 과중한 학업스트레스, 또래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곳 우울, 불안 심지어는 자살로 연결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이렇게 위기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을 갖춘 안정적인 공간 제공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기회제공이 요구됨.
- 청소년(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대전 31.3%명, 충북 36.2%명, 충남 39.7%명으로 2010년 5~24세 청소년 자살률은 충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힘든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아동청소년의 공간 부족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차별임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함.
- 글로벌 시민으로써의 성장과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2. 추진전략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마련
-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아동청소년 카페공간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활동, 취미활동은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개인의 선택으로는 여행도 자유롭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 할 수 있는 도시형 숙박공간을 마련하여 명상프로그램, 휴식프로그램 등의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쉼의 기회를 제공함

3. 추진방법

- 충북도내의 공공시설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내 요구조사를 통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
- 휴식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신축 또는 기존건물 활용)

복지
는
생활
입니다

사회인프라

당사자형 주민참여예산

‘복지예산 우리가 결정한다’



1. 현황과 필요성

- 지방정부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청주시의 경우 2014년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은 4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는 과거의 주장처럼 복지예산 00% 증액의 의미가 삶의 질 확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복지의 중복문제, 전달체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궁극적인 문제를 분석하면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지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가 중요함. 제도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권고 하고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임.
- 영국의 뉴캐슬주에서는 아동예산의 20%를 아동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하는 ‘유디사이드’ 참여예산제를 시행함으로써 아동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민선 5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경기 부천, 인천 연수구, 서울 서대문구, 광주, 울산 등에서도 진전된 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이라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각 복지 주체, 지역민들의 복지욕구를 예지적 관점에서 설정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사자들이 필요한 예산을 일정비율 결정하게 하는 복지예산 편성 과정의 혁신이 필요함.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기는게 아닌 직접민주주의 실현, 보편적 복지욕구 확장의 기회임. (빈곤은 권한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

2. 추진전략

- 지방정부 복지예산 편성과정과 결정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혁신프로그램 시행

3. 추진방법

- 지방정부 복지예산 중 각 분야별 자체사업비 10% 당사자 결정권 부여
- 자체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10%는 임기내 목표치로 연도별 단계적 확대
- 기존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 선행후 당사자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 지방정부 복지정책&예산 결정과정 개혁
- 모든 정책결정과정 (의견수렴과정, 예산요구서 공개, 관련회의자료 등) 공개 의무화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제작해 줄

‘충북아동청소년 행복재단’

사회인프라

1. 현황과 필요성

-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상담사업비, 청소년육성기금 및 후원금 등의 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관을 지원하고, 충북만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비전 제시는 물론 진정한 허브역할 기관이 절실 함.
- 행복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타운을 조성하여 열악한 청소년단체 및 기관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청소년문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요구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조사연구, 프로그램개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등 청소년과 청소년기관·단체를 위한 다양한 전문사업이 필요하며, 청소년기관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충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복지·자립·보호 등 과 관련한 영역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기관 역할이 요구됨.
- 현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등이 설립되어 청소년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재단설립이 급선무 되어야 함.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충청북도의 직영 아닌 직영체제로 혼란스럽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청소년과 관련된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운영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 함.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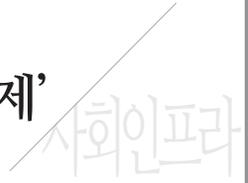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여 청소년 관련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허브역할 수행
- 청소년기관·단체 등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 청소년기관·단체 상호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문 서비스 ONE-STOP 제공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종합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중심 역할과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운영

3. 추진방법

- 입지조건, 수요조사 결과, 예산 및 시설규모,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지역 내 청소년들의 요구변화에 맞도록 현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공간 구성 방안 논의
- 연차별 예산 마련을 통한 전문 사업추진 및 연차별 평가 실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 전담공무원제’



1. 현황과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 됨.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통해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지방 청소년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 유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현행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로는 담당공무원의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움.

2. 추진전략

- 조례 개정을 통한 민간전문가를 배치 함

3. 추진방법

- 조례 개정 및 관련규정의 정비
- 청소년관련 부서(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복지는 생활입니다

교육복지

충북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실현”

교육복지

1. 의의

- 현재 초중등학교 99개교에 한정된 교육복지의 혜택을 470여 교내 전 학교에 적용

2. 추진방안

-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전문인력 배치, 사업비만 지원, 교육청 센터에서 직접 관리 등의 다양한 방식을 발동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이 교육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도록 함. 이를 통한 학교 교사의 불필요한 부담 획기적 경감

충북고유의 교육복지프로그램으로

“4plus(조식+/건강+/정서지원+/문화+) 특화사업”

교육복지

1. 의의

- 충북의 교육복지 특화사업으로서 종합돌봄(total care) 차원에서 급식, 건강, 정서지원 및 문화 등 4대 핵심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충북의 교육복지 독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 이로써 기존의 교육복지 및 관련사업과 결합하여 충북 도내 교육 대상자에 대한 total care 에 걸맞는 사업이 실현됨.

2. 추진방안

- 한끼플러스 : 아침식사 부실 학생에게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아침 급식
- 건강플러스 :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 신체활동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지역체험 확대
- 사랑플러스 : 부모와의 집단프로그램, 학습등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문화플러스 : 공연관람 및 공연실연,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교육복지+실현”

교육복지

1. 의의

- 저소득 가정 아동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신체·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의 개별적 그리고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복지·문화 영역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복지는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
- 이러한 교육복지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학교의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있음.

2. 추진방안

- 교육복지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대상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역사회 내의 아동관련 사회서비스 조직(예를 들어, 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사업 담당자들 간의 보다 긴밀하고 구체적 소통이 필요함.
- 이러한 구체적 소통을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망이 필요함.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교육복지운영 모델 적용

교육복지

1. 의의

- 학교에 따라, 도-농간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한 여건과 해결문제를 갖고 있어 차별화된 교육복지 운영

2. 추진방안

- A형 : 교육복지중점대상자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교육복지사 상주
- B형 : 중규모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의 교육복지센터가 지원
- C형 :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교육청의 교육복지센터가 직접 사업 진행

교육복지관련 통합관리를 위해 충북 교육계의 행정체제 개편(교육청 소관)

교육복지

1. 의의

- 교육급여, 초등돌봄, 학업중단지원 등 교육복지성격의 사업을 통합접근하도록 도-지역교육청-센터간 행정효율화

2. 추진방안

- 도 교육청 내 교육복지과에 관련 유사사업 일괄 관리하고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
- 지역교육청을 4대권역으로 묶어 교육복지센터를 설치, 학교내 교육복지사업 효과적 지원

충북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제안하는 복지혜

복지는 생활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환경 개선

[무료급식소 설치 시설 인건비 지원]

1. 제안배경

- 상시 50인 이상 이용하는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소 신고 및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 52조)토록 되어 있으나 영양사, 조리사 채용에 따른 급여 보전이 없으며 경로식당사업 운영보조금 총액의 20% 내에서 충당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인력 채용 한계, 운영비 부족, 급식의 질 향상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무료급식소 설치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2. 소요예산

- 영양사 인건비 25,000,000원(월급여 1,800,000원) × 1명 × 12개소 = 300,000,000원
- 조리사 인건비 21,000,000원(월급여 1,500,000원) × 1명 × 12개소 = 252,000,000원

3. 기대효과

- 무료급식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급식의 질 개선

[석면제거공사비용 지원]

1. 제안배경

-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종사자들이 석면함유 건축물로 인해 위해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있음. 최근 석면질환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석면제거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시·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관이 존재함. 이에 충청북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석면제거공사에 앞장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보장과 환경 개선이 필요함.

2. 소요예산

- 공사비용 30,000,000원 × 3개소 = 90,000,000원

3. 기대효과

- 위해물로부터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

자활사례관리사 운영 배치

1. 제안배경

-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근로능력 미능력자의 비율 증가하고 있음
- 자활참여주민은 근로능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능력과 복지욕구 등이 다름에 따라 자활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증가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통장사례관리 업무의 지역자활센터 일원화
** 통장가입자에 대한 저축독려, 교육안내 및 복지서비스·지역사회연계 등
- 자활센터에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으나 참여주민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사례관리를 통한)를 연계할 필요 있음.

2. 추진방안

- 12개 지역자활센터 중 사례관리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8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3. 소요예산

- 사업비 : 268,800,000원(도비+시군비) 매칭비율 50:50
- 산출근거 : 8개센터 × 33,600,000원(보건복지부 자산형성담당자 지원기준) = 268,800,000원

4. 기대효과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10)으로 참여주민 확대에 따른 사례관리강화
-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근로능력 미능력자의 비율 증가에 따른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자산형성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례관리 대상자 증가

자활사업을 위한 필수적 공간 지원

1. 제안배경

- 현재 충북도내의 자활센터 중 청주지역자활, 청원지역자활, 증평지역자활, 충북광역자활센터 등이 많은 임대료를 지출하여 운영비가 모자란 상황임
- 또한 참여주민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때 사업장 임대료 부담이 커서 사업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음 (자활사업규정 사업비: 운영비 비율 7:3 혹은 8:2 등 비율에 얽매임)
- 이에 광역지방자치 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 및 사업장 무상임대 지원 필요

2. 추진방안

- 공공 건물 무상임대 등 유휴 공간의 지원 필요

3. 기대효과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탈수급율 증가
- 사업운영의 획기적 변화 및 매출금 증대 효과
- 생산적 복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처우수당(대우수당) 지급 의무화

1. 제안배경

-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한 경영환경(급여수준)
- 구인난(실근무 인원 부족으로 인한 감산, 인근 지역과의 임금격차)
- 장기요양제도의 개정, 구인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요양시설의 경영은 열악하기 그지없음.
- 치매국가책임제 민관이 주도하였고 국가와 상생의 관계로 함께 가야함
- 특히,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각함. 급여가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

예시) 강원도는 2015년 10월8일 조례를 개정하여 요양시설의 직원들에게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노인들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음. 그러다 보니 강원도를 인접하고 있는 제천의 시설들은 직원들 구인하기가 힘들. 영월, 원주, 영주 등 타시도와 인접하여 있기에 “복지수당”이라는 장점으로 강원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음. 충북의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시설임

2. 추진방안

- 사회복지시설 처우수당(대우수당) 지급 의무화 : 제천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북 조례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입니다. 종합계획, 실태조사의 주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충북조례에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북, 강원의 조례를 토대로 보수수준,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주기, 수당 신설 등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도 처우수당(대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 타시도와의 임금격차 해소, 구인난 해결
-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정상화 - 감산의 불이익 감소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도동일노동 동일임금을

1. 제안배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업무소진, 이직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현황

※ 충북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충북도 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중 6개소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센터임.
- 건가다가 통합센터(6개소) : 청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 다가센터(7개소) : 청주(청원), 충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1)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이용시설과 비교 시 다소 낮게 책정

- 유사 직위로 비교 시, 직위 및 호봉이 높아질수록 급여 차이 발생

〈표1.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18)과
여가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표(2018) 비교〉

(단위 : 원/월)

구 분	직위	1호봉	10호봉	20호봉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보건복지부-	A.관장	2,459,300	3,486,300	4,335,800
	B.부장	2,191,500	3,143,600	3,952,100
	C.사회복지사	1,700,000	2,400,800	3,010,200
	D.관리직(3급)	1,618,000	2,257,200	2,820,4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a.센터장	2,288,000	2,953,000	3,615,000
	b.팀장	1,960,000	2,638,000	3,300,000
	c.팀원	1,708,000	2,375,000	3,037,000
	d.행정인력등	1,574,000	2,018,000	2,670,000

(2) 처우개선비 및 대우수당 지원

-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충청북도 대우수당 지원 대상으로, 상근 총 129명 중 45명(정수 책정된 종사자 한정)에게 제공

※ 정수 책정 : 여가부 지침(2018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19p) - 가형 5인, 나형 4인

※ 2018년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지침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제2조 각목의 법률에서 정한 신고(지정)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함.
 - ※ 종사자 : 국가·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정수 책정된 상근 종사자
- 지원액 : 월 14만원 ~ 16만원(근무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 대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센터의 정수 미포함 상근 종사자(별도지원사업 종사자 : 언어발달, 이중언어, 통번역, 사례관리 등)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처우개선비(월 10만원) 지원 중임.

※ 아이돌봄지원사업 상근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18년부터 지원됨.

〈표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비율 및 종사자(팀원) 급여 변경현황〉

(단위 : 천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팀원	하한: 1,550 상한: 2,000	하한: 1,600	하한: 1,640	1,600	1,600	1,615
행정직원	하한: 1,150 상한: 1,430	하한: 1,200	하한: 1,240	1,200	1,200	1,265

* 1호봉기준 *여성가족부. (2011~2016). 「2011년 ~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참고

2. 추진방안

- 1) 2018년4월3일 충북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회 주관 ‘충북이주·다문화가족포럼’을 통해 충청도에 관련사항 건의함(도지사님 참석).
- 2)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족지원센터협회 2017년 지침 개선단을 결성하여 일부 지침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계획임.
-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여성가족부 산하시설 사회복지사 인건비 현실화관련 모임 3월에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4) 충북형 복지모델 계획시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도 반영 바람.

3. 소요예산

- 1) 2018년 충북이주·다문화가족포럼 집행(100만원)
- 2)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족지원센터협회 활동경비 지출예정(액수 미상)

4. 기대효과

- 다문화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근무환경개선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
-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자부심함양에 기여
-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률감소로 사업의 질적함양에 기여
-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여성폭력방지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1. 제안배경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중 여성폭력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되면서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르게 하면서 임금체계는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음.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기준을 준하여 호봉 책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괄 운영지원금으로 예산범위 내 기본급 책정이 불가한 상황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표가 없음.
-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 사업예산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중 4.9%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폭력피해 재발방지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여성발전기금과 범죄피해자지원기금 사업비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충북은 전혀 그렇지 않음. 이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업무소진, 이직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2. 여성폭력방지업무 종사자 처우현황

※ 충북도내 여성폭력방지업무 관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4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상담소 6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성매매상담소 1개소, 통합상담소 2개소, 해바라기센터 2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1개소로 총 22개 기관 종사자수는 90여명

- (1)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고, 있는 기관도 자체 기준임.
- (2)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임금에 60%를 밑돌고 있는 수준
- (3) 전국 상담소를 비교하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4) 충청북도에서 대우수당 항목으로 일부 지역 지원하고 있음. 충북내에서도 격차가 심함.

3. 제안사항

- (1)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2) 동일노동 동일임금
- (3)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수당 및 복지제도 마련

-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기금을 여성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적극 건의
- (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요구

4. 기대효과

- 사회안전망의 전초기지를 담당하는 시설 종사자로 전문성 확보
-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자부심함양에 기여
-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률감소로 사업의 질적함양에 기여
-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만들기

1. 제안배경

- 충북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16%에 육박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하였으며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에 관한 비중은 앞으로도 점점 커져갈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통합을 주장하는 노멀라이제이션 사상의 보편화, 세계화 및 정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각종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공공환경을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 장애인은 물론 임신부나 노인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사항은 각종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 그 사례 중 서울의 한 공공시설은 여담이문만 설치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문을 열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임신부들은 협소한 공간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설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나 임신부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며 이는 점차 확대돼야 하겠다.

2. 추진방안

- 1)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례개정 및 시행
 -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연구수행 및 매뉴얼 개발, 세부지침서 제작 및 배포
 - ※의정부시, 서울 은평구 등은 조례 제정 및 시행
- 2)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 및 마련
 - 공공시설 중 신축 또는 리모델링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
 -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기술지원
- 3)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 편의증진 관련 공무원, 건축주,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 편의증진 대국민 홍보

3. 기대효과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환경 제공의 점차적 확대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시설 이용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
-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및 마련을 통해 추후 노인 등 시설이용약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시설물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추가적 비용투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장애인의 학습권 지원 및 보장

1. 현황과 필요성

- 대상자(장애인)욕구의 변화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의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 307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평생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2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4)
 -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인 중 41.7%가 평생교육을 받았으나 자폐성장애인은 32.9%, 지적장애인은 1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4)
- 사회환경적 변화
 -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대학활용모형이 제시되고 있지만 학력인정, 대상의 한정성 등의 문제로 보완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장애유형과 선호를 반영해 직업과 자립생활 위주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평생 교육 과정의 개설은 절실한 사회적 욕구로 받아들이고 있음.
- 장애인들의 여가문화. 예술 등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욕구는 높는데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많음. 특히 발달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선 평생교육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충북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성인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 단위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도 단위에서 보면 각 시군의 장애인들이 골고루 모두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현재는 공모로 1억4천만원지원운영)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사업 등을 통합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업으로 확대하여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대상에게 골고루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2. 추진방안

- 도내 12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평생교육예산 배정
- 장애인복지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On-Off Line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3. 기대효과

- 학습관 설립전 도내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선 시행
- 유휴면적의 도 부지에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학습관 신축
- 재원조달은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시스템 제공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1. 제안배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있음
- 현재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을 제외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

2. 추진방안

- 지자체별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교육 실시를 통한 구매확대
- 충청북도 시.군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반영

3.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근로장애인 임금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1. 제안배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보호기능과 고용을 통한 경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타분야 시설에 비해 종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에 종사자배치기준을 개정하여 더 많은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근로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매출확대를 통한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추진방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배치기준을 2016년도 개정 후 배치기준에 따라 지원

3. 기대효과

- 근로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강화 및 매출확대를 통한 급여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등

1.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는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탈 시설화는 장애유형 15개 및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요류 및 탈루 등 간질장애. 발달장애 등 정상화 이론에 근접할 수 있는 장애유형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적장애나 지적중증장애인(와상 및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상당수)의 경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는 단 몇 일도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부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부모형제들도 없지만 있어도 비장애인들의 멸시와 차별 등으로 각종 사기 및 편취에 이용되고 있다=핸드폰 개통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요금만 장애인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행위.

장애인명의로 자동차 할부 구입 후 장애인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행위 등 등 비장애인들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다 적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소외와 멸시, 인격적 모독 등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지적장애인보다 비교적 덜 소외받는 지체장애 및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요구에 지적장애인들이 탈시설도 못하고 거주시설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도 탈 시설화 시키고 싶다.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없다며 도심지내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 수 없도록 산속으로 내몰아놓고 이제와서 대책도 없이 탈 시설하자면 어찌자는 말인가?

우리 장애인거주시설협회도 탈 시설화 정책에 찬성한다.

이용시설(복지관이나 낮시간만 케어하는 시설)처럼 저녁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낮 시간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싶다.

현재의 실정은 거주시설이므로 24시간 장애인들을 돌 봐야 한다. 밤시간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신변상의 문제, 돌발상황, 급한 환자발생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잠시도 혼자 버려둘수 없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저 유럽의 몇몇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현실은 모르고 지체장애나 시·청각장애 등 사회에서 살아도 무방한 장애인들의 외침에만 귀 기울이는 현실 속에 거주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보다 더 큰일은 작금의 실정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도 탈 시설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일부 장애인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탈시설을 계획하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항의하고 싶음.

2. 장애인복지시설 30인 소규모화에 대해

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30인 이하 축소방안에 대해...

= 탈시설화 이전에 추진된 대규모시설을 축소시켜 30인 이하 소규모화 추진은 환영한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은커녕 아무런 대책없이 소규모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소규모화 할려면 시설도 소규모화시켜야 하고 현재 운영중인 대규모시설을 분리시키고 세분화해야 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대책도 없이 정책만 입안해 놓고 대규모시설에 운영비 동결 등의 조치는 정부가 탁상에만 앉아 표는 탁상행정엔 불과한 정책이다.

② 문제인정부 들어서서 탈시설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충북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현안문제로 장애유형 15분류에서 가장 탈 시설하기가 어려운 유형이 지적이나 발달장애에 있다.

사회복지가 꽃핀 북유럽국가에서조차 탈시설이 다시 시설화로 유턴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대안 : 우리가 먼저 탈시설을 외치자.

탈시설을 외치는 장애인 단체나 부모, 형제를 대상으로 탈 시설화를 홍보해서, 밤에는 집이나 장애인 단체가 보호하고 우리 생활시설은 낮시간 각종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지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예: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시장보기, 커피숍 이용하기, 백화점 찾아가기, 좋아하는 취미생활권장하기(운동, 십자수, 꽃꽂이 등) 등의 프로그램의 편견의 벽을 깨고 장애와 비장애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3. 현재 전국 몇몇시설에 닥친 사안이지만 곧이어 전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야간수당에 대해

현재 거주시설(생활시설=24시간 가정에서처럼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설) 특성상 야간 당직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계를 통해 시설장에게 지난 몇 년간의 야간 수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3교대 근무보다 야간수당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노동법과 충돌하지 않고 야간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증액을 요구해 이 방안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거주시설 여건상 야간시간에도 케어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는 중앙환원 이후 야간근무는 정책입안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노동법에 저촉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법이 상위법이라고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복지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시설장이나 법인은 속수무책으로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국가 사업이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데 종사자들의 급여를 정부 예산아니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4. 생활시설 예산 중앙환원 후 직업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 등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생활시설은 2015년 중앙환원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어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생활지도원 1호봉 기준으로 월 20여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사무국장이나 원장 급여는 연간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 환원으로 오히려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5. 200인 시설에만 관리인 배치에 대해

= 대부분의 거주시설들이 건평 300여평 이상, 부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200인 이상 시설에만 관리인을 배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0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기존 거주시설은 24시간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크고 작은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으면 보일러를 비롯해 상, 하수도 배관, 지붕개량, 텃밭가꾸기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해도 전문성 없는 생활지도사들의 손에 의해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인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신규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주시설들이 신축 20-30년 이상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유지 관리 보수에 필요한 인력이 없어 외부에서 인력에 의존하다보니 수선비나 점검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정부는 거주시설(충북기준 27개 시설)에 대해 관리인 배치를 서둘러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

시니어클럽 정체성 확립 및 원활한 운영 방안

1. 제안배경

- 시니어클럽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문 수행기관이라는 정체성 확립 필요
- 예산 확보를 통한 원활한 기관 운영 필요

2. 추진방안

(1) 지자체별 시니어클럽 설립

- 현재 도내에는 11개의 시니어클럽이 있으나 청주시에 6개소가 밀집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보은, 영동, 단양, 괴산, 증평 등의 지역에 대한 시니어클럽 설립이 시급한 상황임. 충북지역 11개의 시군 중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만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시니어클럽 신규 개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지자체에 1시니어클럽 설립이 필요하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참고자료-2018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내부자료〉

회원기관 현황(신규 가입기관 3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7+2	16	8	1	5	5	3	16	135 (132+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11	10+1	13	6	12	7	2	

* 2017.12.31. 기준 전국시니어클럽 기관수 143개소(회원 135개소+비회원8개소)

(2) 도비 매칭을 통한 기관운영비의 지원

- 현재 충북의 경우 광역매칭 비율 0%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광역단위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전국 운영비 평균(272백만원)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현재 직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실제 직원 수를 줄이거나 호봉이 낮은 직원으로 인사이동 조치하는 일이 현장에서 존재함.

<참고자료-2018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내부자료>

운영보조금 광역·기초 매칭 비율

순번	지회명	전체 기관수	회원 기관수	구분	운영보조금비율(%)			보조금평균
					소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	서울	9	9	서울특별시	100%	50%	50%	310
2	부산	16	16	부산광역시	100%	85%	15%	268
3	대구	8	8	대구광역시	100%	95%	5%	282
4	광주	5	5	광주광역시	100%	100%	-	224
5	대전	5	5	대전광역시	100%	100%	-	286
6	울산	3	3	울산광역시	100%	70%	30%	245
7	경기	16	16	경기도	100%	10%	90%	317
8	강원	13	10	강원도	100%	-	100%	275
9	충북	11	11	충청북도	100%	-	100%	260
10	충남	11	11	충청남도	100%	30%	70%	219
11	전북	13	13	전라북도	100%	10%	90%	230
12	전남	6	5	전라남도	100%	30%	70%	251
13	경북	12	12	경상북도	100%	100%	0%	292
14	경남	7	7	경상남도	100%	-	100%	232
15	제주	2	2	제주도	100%	100%	0%	422
16	인천계양	1	1	인천광역시	100%	30%	70%	320

(3) 시장형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

- 시장형 사업의 경우 인원수 배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어르신 1인당 연 210만원의 지원이 전부인 상황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이 필요.
-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형사업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충북의 대표 아이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제점
 -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매우 어려운 사정임.
 - 최저임금에 대한 기관의 부담 가중
 - 참여자간 노동강도가 높은 시장형 사업단 기피현상 발생
(공익형 인건비 : 시간당 9,000원 / 시장형 인건비 : 시간당 7,530원)

3. 소요예산

4. 기대효과

- 지자체별 시니어클럽 설치를 통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문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정체성 확보
-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도모

